"주 최대 52시간 시행,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"

고용노동부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참여 사업장

(경유)

제목 **워라밸일자리 장려금 '22년도 사업개편 및 시행 안내**

1. 평소 고용노동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2. 2022.1.1.부터 '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'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됩니다.

※ (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) 근로자가 가족돌봄, 본인건강, 학업, 은퇴준비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,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를 허용해야 함(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)
☞▲주 소정근로시간 15~30시간으로 단축, ▲연장근로 요구 금지,▲ 불리한 처우 금지 등

3. 아울러,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는 '워라밸일자리 장려금'을 지원하고 있으며,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붙임과 같이 장려금의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을 개편하여 '22.1.1.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(주요 개편내용):▲ 주 소정근로시간 15~30시간으로 단축, ▲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, ▲ 간접노무비 인상 및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종료, ▲ 단축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제한, ▲ 3개월 단위 신청 등

※ '22년도부터 변경·시행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급요건을 확인하시어, 지원금 신청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기타 세부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(www.worklife.kr)>알림마당>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,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팀)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.

붙임: 20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1부. 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주무관	임익수	행정사무관	이병렬	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	전결 2021.12.21. 최준하

협조자

시행 고용문화개선정책과-2725 (2021. 12. 21.) 접수

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,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5층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44-202-7505 팩스번호 044-202-8056 / lim8147@korea.kr / 비공개(7)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